

## 결 정

2018 - 3047 신문윤리강령 위반  
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중 면

## 주 문

머니투데이(mt.co.kr) 2018년 1월 15일 현재 연재만화 「구미호」 1화와 46화에 대하여 '주의' 조치한다.

## 이 유

1.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만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

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딱하니 누워 있는게 아닌가?

흑  
흑  
흑

어떤 슬픔이  
있길래 이리  
슬퍼울고 있소?

툭

jumpguy@naver.com



배고파서  
그렇다!!!

오늘은 네놈의  
간을 시식해야  
겠다!!

그녀는 구미호였다



절대 절명의  
순간  
사내는 피를  
내었는데  
.....

잠깐! 이 간 보다  
더 좋은 맛!  
줄여서 '존맛'이라는게  
있소!! 간이야 맘만  
먹으면 얼마든지  
먹을 수 있으니  
존맛부터  
먹는데 순서라  
생각하오!!



존맛..?

거... 걸렸다



바로 이게  
존맛이오!!

막대기 같이  
생긴게 별로  
맛있어 보이지  
않는데...

파

그..그건 당신이  
이 존맛을 몰라서 그렇소  
잠깐 엉덩이를  
내밀어 보시오!!



<계속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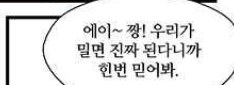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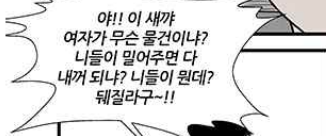
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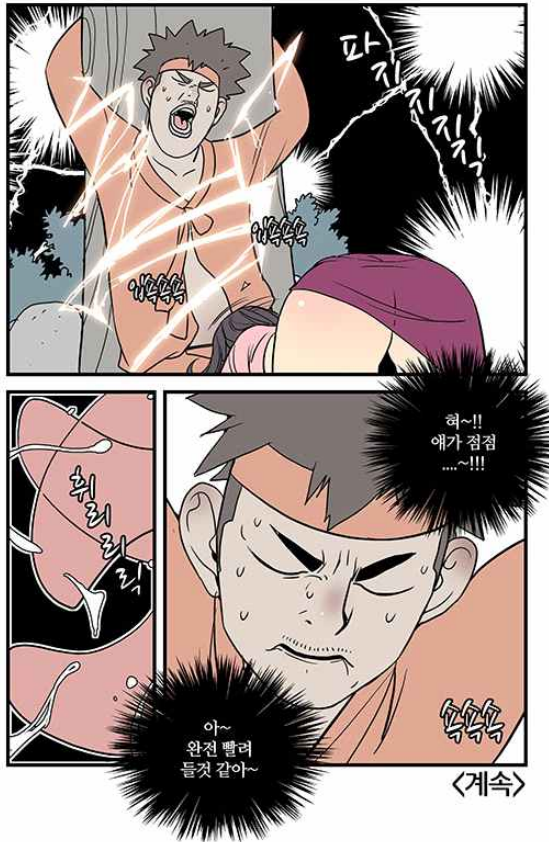
<18. 1. 15. 10:30 캡처>

<<http://comic.mt.co.kr/view/14423>>

『







MT 머니투데이

K 기획 : (주)케이코믹스  
www.k-comics.com

』

<18. 1. 15. 10:33 캡처>

<<http://comic.mt.co.kr/view/17036/desc>>

2. 위 만화 내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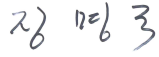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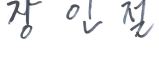






위 만화는 머니투데이 만화 「구미호」의 일부로, 에피소드별로 그려진 연재물이다. 매회 구미호가 등장하는데 노출이 심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. 남자의 성기가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오럴섹스 장면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했고, ‘존맛’ 등 저속한 표현이나 ‘퍽퍽’ ‘입속속속’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의성어도 사용하고 있다. 만화의 작성날짜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,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.

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성인 인증장치가 요구된다.

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, 제 13조 「어린이 보호」 ④(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), 신문소설·만화 심의기준 6(성행위 장면을 선정적, 음란하게 묘사한 것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 용 담	
위원	정 승 호	
	장 명 국	
	이 동 현	
	장 인 철	
	김 규 식	
	강 희	
	하 윤 수	
	김 영 모	
	박 현 갑	
	박 미 경	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 기자는 성범죄,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.

제13조 「어린이 보호」 ④(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) 언론인은 폭력, 음란,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.

신문소설·만화 심의기준 6. 성행위 장면을 선정적, 음란하게 묘사한 것)